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의무화 등〉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16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의무화 등	3

I. 제안경위

2026년 4월 1일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Ⅲ. 검토의견

1.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의무화 등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u>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 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 ----- ----- ----- ----- ----- <u>처리하여야</u>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u>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u>관할 구역 외의</u>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② ----- -----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 ----- <u>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u>

현행	개정안
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관할 구역 외의----- ----- ----- ----- -----.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¹⁾ 및 반입협력금 제도²⁾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발생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되,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외에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할

1)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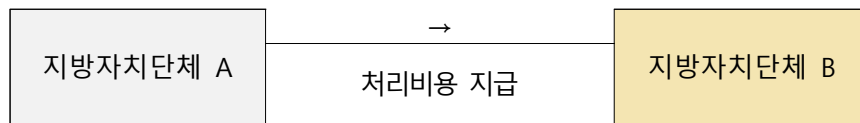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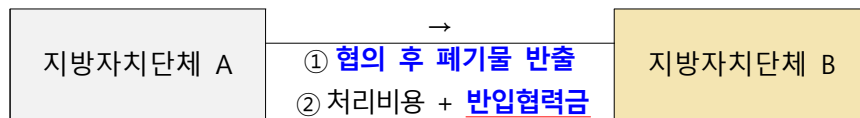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22. 12. 27. 「폐기물관리법」 개정(2024. 12. 28. 시행)을 통하여 도입되었음.

【 발생지 처리 원칙 및 반입협력금 시행 전·후 비교 】

□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 A 생활폐기물 → 지방자치단체 B **공공처리시설**로 반출



□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A 생활폐기물 → 지방자치단체 B **공공처리시설**로 반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처리는 2021년 1,095만톤에서 2023년 1,040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민간 위탁처리가 2021년 576만톤에서 2023년 623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 】

(단위: 만톤)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총 계	1,095	4	576	1,060	5	611	1,040	6	623
매 립	247	—	1	211	—	1	177	—	1
소 각	440	—	61	428	—	67	434	—	64
재활용	401	4	510	408	5	540	421	6	552
기 타	7	—	4	13	—	3	8	—	6

자료: 국가통계포털-“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생활폐기물” 재구성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1월~5월 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약 122만 3,500톤인데, 이 중 공공처리는 80.0%(97만 8,300톤), 민간처리는 20.0%(24만 5,200톤)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민간 처리 물량 중 4만 3,500톤(17.7%)은 충청권, 영남권 등 타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반출되어 처리되었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³⁾에 나서는 등 민간 위탁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할 구역 내 자체 시설 및 광역 시설⁴⁾을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관할 구역 외 반출 처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의 범위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3)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충청권,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공동 대응 강화”, 2026. 1. 27.

- 공동 대응 방안: 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②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③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4)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② 폐기물을 수용하는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이 결합된 시설에 한하여 관외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간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율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안 제5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화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 해석상 현행 규정과 개정안 간에 중대한 행정적 의미 변동이 수반되지 않음.

둘째, 안 제5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① 관외 반출 처리가 가능한 범위를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제한할 경우 비상 상황 시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② 민간 위탁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및 계약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대상을 특정하여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③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이 현재 명확하지 않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의 절대적 의무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권 제약과 관외 반출 제한으로 인한 민간 업체의 영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

포천시는 현행법상 위탁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점, 개념이 모호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을 이유로 각각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임.

한국폐기물협회는 지자체의 사전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관내 처리미이행 시 위법으로 평가되는 점 및 관외 반출 제한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민관협력 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점, 처리시설 제한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란 가능성을 이유로 각각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은 ①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 확보 및 '민관협력·지역상생형 모델' 연계를 통한 반입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필요성, ② 관외 반출 제한 조치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백 발생 가능성, ③ 민간 업체의 영업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48